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자 료</h1> <p style="color: red;">3월 8일(화) 국무회의 시작(10:00) 이후</p>	
배 포 일	2022. 3. 7. / (총 3매)	담당부서	사회서비스정책과
과 장	임 은 정	전 화	044-202-3210
담 당 자	김 복 연		044-202-3201

##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(3.8)

-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위탁·수행기관을

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 -

-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8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  - 이번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정(2021.9.24. 공포, 2022.3.25. 시행 예정)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,
    - 새롭게 설립되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가 규정\*됨에 따라 해당 업무의 위탁·수행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.
- \*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2조(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업무) 1.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·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

○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

- ‘한국사회보장정보원’에 위탁·수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의 정보 공개 업무를 ‘중앙사회서비스원’에게 위탁하는 것이다.(안 제7조 제2항)

○ ‘중앙사회서비스원’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,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·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는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·지원 전문기관으로, 오는 3월 25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,

- ① 전국 단위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 및 지원, ②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, ③ 시·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, ④ 사회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 보호 등 핵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.

□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‘중앙사회서비스원’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·수행하게 됨으로써,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<붙임>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요

<별첨>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**붙임**

**중앙사회서비스원 개요**

□ 기관 개요

- (출범·성격) '22.3.25(예정),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 법인
- (주요 역할)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와 시·도 사회서비스원 지원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
- (인력·예산) 정원 50명, 83억원('22)
- (사무실) 나라키움 저동빌딩 9층(서울 중구)
- (조직·구성) 1실 2본부 1팀(안)

□ 주요 기능

-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,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·운영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·지원 전문기관(법 제31조)
  - ① 전국 단위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 및 지원, ② 다종·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, ③ 시·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, ④ 사회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보호 등 핵심기능 수행(법 제32조, 제34조, 제37조 및 제38조)
  - ⇒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이용·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전반적인 격차 해소에 기여

<제32조(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업무)>

1.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·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
2.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
3.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연구·조사·개발
4.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사업
5.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
6. 시·도 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상담·자문 및 지원
7. 중앙 사회서비스원 및 시·도 서비스원의 정책홍보, 시·도 서비스원 직원 교육 제공 및 지원
8.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탁하는 사업
9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